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97
----------	-------

발의연월일 : 2025. 7. 16.

발 의 자 : 김성회 · 남인순 · 윤종오
문진석 · 김기표 · 이광희
백혜련 · 전종덕 · 박지원
이성윤 · 김영환 · 박민규
최기상 · 박홍배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약 38년간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이에 헌법이 시대 변화와 사회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사회 개혁과 국가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헌법의 미비점과 공백을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에만 의존하는 현재 상황은 민주적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그럼에도 우리 헌법이 가진 높은 수준의 경성(硬性)적 특성은 우리 사회의 개헌에 대한 합의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임. 개헌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 탓에, 헌법 개정의 기회가 드물게 찾아올 때마다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세력들이 자신들의

헌법적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려 함으로써, 오히려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따라서 헌법 개정의 논의를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단계적·점진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 절차를 체계화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에 헌법 개정을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두어,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합리적인 헌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4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헌법개정특별위원회) ①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헌법개정제안안의 입안을 위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한다. 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일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⑤ 제4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며,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의 임기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 임기와 같다.

⑥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54조에도 불구하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헌법개정제안안 최종안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안안의 각 조문별로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외에도 제57조제1항에 따른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헌법개정국민자문위원회) ① 헌법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 도출 및 헌법개정제안안 입안에 관한 국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아래 헌법개정국민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헌법개정국민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하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이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간사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 후 최초로 도래하는 국회의원 총선거일까지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⑤ 의원은 헌법개정국민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 ⑥ 헌법개정국민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헌법개정국민자문위원회의 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헌법개정특별위원장의 선거에 관한 특례) 제4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장 선거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5조의2(헌법개정특별위원회)</u> ①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헌법개정제안안의 입안을 위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50명으로 한다. 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관하여는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일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⑤ 제4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며,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의 임기는 헌법개정특별

<신 설>

위원회의 위원 임기와 같다.

⑥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54조에도 불구하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헌법개정제안안 최종안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안안의 각 조문별로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외에도 제57조제1항에 따른 상설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제45조의3(헌법개정국민자문위원회) ① 헌법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 도출 및 헌법개정제

안안 입안에 관한 국회의 자문
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개정특
별위원회 아래 헌법개정국민자
문위원회를 둔다.

② 헌법개정국민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
하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이 헌법개
정과 관련하여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간사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 후 최
초로 도래하는 국회의원 총선
거일까지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
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
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⑤ 의원은 헌법개정국민자문위
원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⑥ 헌법개정국민자문위원회의

	<u>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u> <u>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u> <u>요한 공무원을 둔다.</u> ⑦ <u>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u> <u>규정한 사항 외에 헌법개정국</u> <u>민자문위원회의 운영·지원 등</u> <u>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u> <u>로 정한다.</u>
--	---